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81호 2019. 4. 8.(월)

고 시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및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승인 고시 --- 2

공 고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9
- 임대차계약신고대장 공고 ----- 50



2019 목포 유달산 봄 축제

목포 유달산 봄 축제가 '유(달산) 케(이블카)한 봄나들이'라는 주제로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기간 중 5일간) 개최됩니다.

- ☑ 1주차 : 4. 6.(토)~4. 7.(일) 노적봉 중심
- 4.8만세운동 재현, 시민 노래자랑, 근대역사거리 탐방 등
- ☑ 2주차 : 4. 13.(토)~4. 14.(일) 유달산 일주도로 중심
- 봄바람 노래자랑, 버스킹 공연 등
- ☑ 3주차 : 4. 20.(토)
- 유달산 토요일문화마당, 유케상케 봄날 콘서트 등



회람

목포시 고시 제2019-71호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97호(2019.4.4)로 결정고시된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목 포 시 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대양일반산업단지

- 사업시행자의 성명 :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창 호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56번길 12-20(대양동)

○ 오수중계펌프장, 진입도로, 해수유입시설

- 사업시행자의 성명 : 목포시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서남부권의 산업입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내 산업용지 수요급증으로 용지공급의 불균형 해소

○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1단계 사업으로 반영되어 이와 연계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과 해양 관련 산업 등을 유치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 지역 고용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나. 사업의 개요 (변경)

1) 유치업종 (변경없음)

- C10 식료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네거티브(제한업종)
○ 유치업종 배치계획 및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변경)

구 분	면적(㎡)			유치업종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854,164.9	—	854,164.9	—		
산업1	54,474.8	—	54,474.8	C10 식료품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2	58,934.9	—	58,934.9	C10 식료품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3	31,343.0	—	31,343.0	C10 식료품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4	81,121.9	—	81,121.9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10 식료품제조업(4-1,2,7확지해당)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5	48,154.7	—	48,154.7	네거티브(제한업종)		
산업6	81,854.7	—	81,854.7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7	90,903.0	—	90,903.0	네거티브(제한업종)		
산업8	89,333.7	—	89,333.7	네거티브(제한업종)		
산업9	54,997.6	—	54,997.6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0	54,548.9	—	54,548.9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1	46,227.1	—	46,227.1	C28 전기장비제조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2	20,292.3	—	20,292.3	C28 전기장비제조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3	33,767.8	—	33,767.8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산업14	48,332.2	—	48,332.2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산업15	17,079.9	—	17,079.9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6	42,798.4	—	42,798.4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1,545,006.8	—	1,545,006.8	100.0	—	100.0	
산업시설용지	854,164.9	—	854,164.9	55.3	—	55.3	
지원시설용지	92,186.8	—	92,186.8	6.0	—	6.0	
공공시설용지	597,785.8	—	597,785.8	38.6	—	38.6	
도로	264,259.4	—	264,259.4	17.1	—	17.1	
주차장	9,277.0	—	9,277.0	0.6	—	0.6	
자동차정류장	91,476.9	—	91,476.9	5.9	—	5.9	
공공청사	21,873.8	—	21,873.8	1.4	—	1.4	
오수중계펌프장	500.0	—	500.0	—	—	—	
공원	51,306.7	—	51,306.7	3.3	—	3.3	
완충녹지	19,975.3	—	19,975.3	1.3	—	1.3	
경관녹지	139,116.7	—	139,116.7	9.0	—	9.0	
기타시설용지	869.3	—	869.3	0.1	—	0.1	
해수유입시설	187.4	—	187.4	—	—	—	
제방	681.9	—	681.9	0.1	—	0.1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89-1번지 일원
- 면 적 : 1,545,006.8㎡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18년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1,545,006.8	—	1,545,006.8	100.0	
도시지역	1,545,006.8	—	1,545,006.8	100.0	
일반공업지역	1,545,006.8	—	1,545,006.8	100.0	산단 내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2	대양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89-1번지 일원	1,545,006.8	—	1,545,006.8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비 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0	12,263.0	264,259.4	11	5,296.0	114,296.0	5	3,116.0	76,695.9	14	3,851.0	73,267.5	
대로	4	4,699.0	149,184.6	1	850.0	33,826.8	1	1,789.0	59,705.3	2	2,060.0	55,652.5	
중로	13	5,473.0	97,946.9	7	3,435.0	70,531.2	2	851.0	12,940.9	4	1,187.0	14,474.8	
소로	13	2,091.0	17,127.9	3	1,011.0	9,938.0	2	476.0	4,049.7	8	604.0	3,140.2	

※ 주 : 국도 1호선 우회도로(대로 1-7호선)의 경우 총 연장 4,540m 중 지구내 연장은 850m임

소로 1-110호선의 경우 총 연장 224m 중 지구내 연장은 53m임

○도로 세부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계 (대로1류)		1개 노선			4,540 (850)						()는 구역내연장
기정	대로	1	7	35	주간선 도로	4,540 (850)	대1-6 연산동 64-9도	대양동 교통광장 대양동 1074-31도	일반 도로	대양 근린 공원	전라남도 고시 제2000-129호 (2000. 7. 5)	국도1호선 우회도로 ()는 구역내연장
기정	소계 (대로2류)		1개 노선			1,789						
기정	대로	2	19	30	보조간선	1,789	대로1-7	대로2-20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2009. 9. 18)	
기정	소계 (대로3류)		2개 노선			2,060						
기정	대로	3	32	25	보조간선	1,646	대로2-19	중로2-70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2009. 9. 18)	
기정	대로	3	33	25	보조간선	414	대로2-19	대로3-32	일반 도로		”	
기정	소계 (중로1류)		7개 노선			3,435						
기정	중로	1	74	20	집산도로	1,118	대로2-19	대로2-19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2009. 9. 18)	
기정	중로	1	75	20	집산도로	175	대로2-19	중로1-7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6	20	집산도로	494	대로2-19	대로3-3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7	20	집산도로	117	대로2-19	중로1-7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8	20	집산도로	1,074	대로2-19	대로3-3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9	20	집산도로	257	대로3-32	중로1-7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80	20	집산도로	200	대로3-32	중로1-76	일반 도로		”	
기정	소계 (중로2류)		2개 노선			851						
기정	중로	2	70	15	국지도로	250	대로3-32	소로3-398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중로	2	71	15	국지도로	601	중로2-70	대로3-32	일반 도로		”	
기정	소계 (중로3류)		4개 노선			1,187						
기정	중로	3	93	12	국지도로	98	소로1-302	대로2-19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중로	3	94	12	국지도로	456	중로3-93	대로2-19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95	12	국지도로	611	중로3-95	중로1-7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96	12	국지도로	22	중로3-95	대로2-19	일반 도로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계 (소로1류)		3개 노선			1,182 (1,011)						
기정	소로	1	110	10	국지도로	224 (53)	대1-6 용해동 578도	소로1-302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1987-80호 (1987. 6. 5)	()는 구역내연장
기정	소로	1	302	10	국지도로	460	소로1-110	중로3-94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소로	1	304	10	국지도로	498	대로3-32	중로1-78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 11. 5)	
기정	소계 (소로2류)		2개 노선			476						
기정	소로	2	663	8	국지도로	135	중로1-74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 12. 31)	
기정	소로	2	664	8	국지도로	341	중로2-70	중로2-70	〃		목포시 고시 제2017-99호 (2017. 06. 08)	
기정	소계 (소로3류)		8개 노선			604						
기정	소로	3	398	6	국지도로	28	중로2-70	대양산단 서측지구계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 11. 5)	
기정	소로	3	399	6	국지도로	87	중로3-93	소로1-302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소로	3	400	6	국지도로	39	소로1-302	소로3-39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01	4	특수도로	247	중로1-74	경관녹지56	보행자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 11. 5)	
기정	소로	3	402	4	특수도로	103	중로3-94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403	4	특수도로	56	중로3-94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404	4	특수도로	16	소로1-302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482	6	국지도로	28	대양산단 남측지구계	소로1-304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9,277.0	-	9,277.0	-	-
기정	80	노외 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1196-2차	2,934.3	-	2,934.3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81	노외 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1197-3차	651.7	-	651.7	〃	〃
기정	102	노외 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1198-5차	3,969.6	-	3,969.6	〃	〃
기정	103	노외 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1202-1차	555.6	-	555.6	〃	〃
기정	104	노외 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1204-2차	1,165.8	-	1,165.8	〃	〃

다)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	-	-	91,476.9	-	91,476.9		
기정	6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목포시 대양동 1183차	28,511.0	-	28,511.0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 12. 31)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7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목포시 대양동 1186차	62,965.9	-	62,965.9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 12. 3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9호에 따른 목포시장이 설치하는 공용차고지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95,444.0 (159,092.0)	-	195,444.0 (159,092.0)		()는 구역내
기정	11	녹지	완충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49공 일원 국도 1호선 대체우회 도로변	56,327.3 (19,975.3)	-	56,327.3 (19,975.3)	전남고시 제2000-129호 (2000.7.5)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54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38공 일원 대양산단 남측지구계	15,677.3	-	15,677.3	전남고시 제2009-372호 (2009.9.18)	〃
기정	55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10공 일원	14,953.7	-	14,953.7	〃	〃
기정	56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21공 일원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35,643.4	-	35,643.4	〃	〃
기정	57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27공 대양산단 북측지구계	2,426.9	-	2,426.9	〃	〃
기정	58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59공 일원 대양산단 서측지구계	37,285.5	-	37,285.5	〃	〃
기정	59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50공 일원 대양 일반산업단지내 송전탑 선하부지	33,129.9	-	33,129.9	〃	〃

나)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51,306.7	-	51,306.7	-	-
기정	127	공원	근린 공원	목포시 대양동 1222공	18,808.0	-	18,808.0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128	공원	근린 공원	목포시 대양동 1181-4공	18,287.7	-	18,287.7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
기정	129	공원	근린 공원	목포시 대양동 1193-8공	14,211.0	-	14,211.0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21,873.8		21,873.8		-
기정	33	공공청사	-	목포시 대양동 1177-3대 일원	4,000.0		4,000.0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 12. 31)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33-1	공공청사	-	목포시 대양동 1177-1대 일원	5,864.1		5,864.1	목포시 고시 제2018-122호 (2018. 08. 30)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33-2	공공청사	-	목포시 대양동 1177-1대 일원	6,858.2		6,858.2	목포시 고시 제2018-122호 (2018. 08. 30)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33-3	공공청사	-	목포시 대양동 1177-1대 일원	5,151.5		5,151.5	목포시 고시 제2018-122호 (2018. 08. 30)	대양일반 산업단지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하수도(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오수중계 펌프장	목포시 대양동 1179-8잡	500	-	500	전남고시 제2010-323호 (2010.11.5)	대양일반 산업단지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127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부지면적	건 축 물			
			바닥면적	연 면 적		
총 계		18,808.0	—	—	100.0	
기반시설	도로, 광장 등	1,363.0	—	—	7.24	
휴양시설	휴게쉼터1 외 3종	—	—	—	—	
녹 지 및 기 타	녹 지	17,445.0	—	—	92.75	

나) 세부시설

■토지이용계획

시 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규 모	건축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8,808.0	—	—	—	
도로 및 광장	소 계		1,363.0	—	—	—	
		도 로	1,363.0	—	—	—	
휴양 시설	소 계		—	—	—	—	
		휴게쉼터1	—	—	—	—	
		휴게쉼터2	—	—			
	(1)	등의자	—	6EA			
	(1)	파고라	—	1EA			
	(1)	평의자	—	3EA			
녹지 및 기타	소 계		17,445.0	—	—	—	
		녹 지	17,445.0	—	—	—	

■도 로

등급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445	1,363.0	-	-	-	
소 로	진1	3	269	809.0	진입로	대상지경계	대상지경계	
"	진2	3	176	554.0	진입로	대상지경계	진입로1	

2) 128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부지면적	건 축 물			
			바닥면적	연 면 적		
총 계		18,287.7	—	—	100.0	
기반시설	도로, 광장 등	1,225.0	—	—	6.7	
휴양시설	휴게쉼터1 외 3종	—	—	—	—	
녹 지 및 기 타	녹 지	17,062.7	—	—	93.3	

나) 세부시설

■토지이용계획

시 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규 모	건축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8,287.7	—	—	—	
도로 및 광장	소 계		1,225.0	—	—	—	
		도 로	852.0	—	—	—	
		광 장	373.0				
휴양 시설	소 계		132.0	—	—	—	
		휴게쉼터1	—		—	—	
		휴게쉼터2	—				
		휴게쉼터3	—				
	(1)	등의자	—	6EA			
	(1)	파고라	—	1EA			
	(1)	평의자	—	3EA			
녹지 및 기타	소 계		17,062.7	—	—	—	
		녹 지	17,062.7	—	—	—	

■도 로

등급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총 계			214	852.0				
소 로	진1	4	214	852.0	진입로	대상지경계	진입광장	

3) 129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부지면적	건 축 물			
			바닥면적	연 면 적		
총 계		14,211.0	—	—	100.0	
기반시설	도로, 광장 등	1,075.0	—	—	7.6	
휴양시설	휴게쉼터1 외 3종	—	—	—	—	
녹 지 및 기 타	녹 지	13,136.0	—	—	92.4	

나) 세부시설

■토지이용계획

시 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규 모	건축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4,211.0	—	—	—	
도로 및 광장	소 계		874.0	—	—	—	
		도 로	874.0	—	—	—	
		광 장	201.0				
휴양 시설	소 계		—	—	—	—	
		휴게쉼터1	—		—	—	
		휴게쉼터2	—				
	(1)	등의자	—	8EA			
	(1)	파고라	—	1EA			
	(1)	평의자	—	—			
녹지 및 기타	소 계		13,136.0	—	—	—	
		녹 지	13,136.0	—	—	—	

■도 로

등급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총 점	비고
총 계			273.0	874.0				
소 로	진1	3.0	11.0	33.0	진입로	대상지경계	광장	
"	산1	2.0	262.0	841.0	산책로	광장	산책로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산업1	-	54,474.8	1	14,915.7	• 분할 가능 (1,650m²이상) • 합병 가능
			2	13,216.8	
			3	13,352.8	
			4	6,500.0	
			5	6,489.5	
산업2	-	58,934.9	1	7,935.2	
			2	9,772.6	
			3	5,868.3	
			4	6,654.8	
			5	5,163.4	
			6	5,768.0	
			7	4,714.7	
			8	4,861.7	
			9	4,155.4	
			10	4,040.8	
산업3	-	31,343.0	1	6,567.0	
			2	6,613.0	
			3	6,657.3	
			4	3,839.1	
			5	2,642.2	
			6	2,646.2	
			7	2,378.2	
산업4	-	81,121.9	1	12,291.1	
			2	12,076.8	
			3	12,205.2	
			4	12,277.3	
			5	12,136.1	
			6	11,055.7	
			7	9,079.7	
산업5	-	48,154.7	1	2,943.1	
			2	2,915.8	
			3	6,124.4	
			4	4,779.7	
			5	10,845.1	
			6	10,182.4	
			7	10,364.2	

도면 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m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²)	
산업6	-	81,854.7	1	16,583.3	• 분할 가능 (1,650㎡ 이상) • 합병 가능
			2	16,666.9	
			3	20,675.9	
			4	6,914.1	
			5	6,915.5	
			6	7,048.8	
			7	7,050.2	
산업7	-	90,903.0	1	4,471.0	
			2	4,471.3	
			3	8,929.9	
			4	8,883.7	
			5	8,910.6	
			6	4,891.9	
			7	4,738.4	
			8	4,470.3	
			9	4,467.9	
			10	8,820.3	
			11	8,993.9	
			12	8,962.9	
			13	4,892.4	
			14	4,998.5	
산업8	-	89,333.7	1	4,891.4	
			2	4,877.9	
			3	8,600.8	
			4	8,560.1	
			5	8,593.6	
			6	8,684.0	
			7	5,248.6	
			8	5,218.0	
			9	8,695.3	
			10	8,657.9	
			11	8,630.9	
			12	8,675.2	
산업9	-	54,997.6	1	6,965.4	
			2	6,986.8	
			3	6,967.5	
			4	3,180.5	
			5	3,132.1	
			6	7,012.4	
			7	7,176.3	
			8	7,197.2	
			9	3,253.5	
			10	3,125.9	

도면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산업10	-	54,548.9	1	3,099.2	• 분할 가능 (1,650m²이상) • 합병 가능
			2	3,113.5	
			3	6,861.8	
			4	6,869.7	
			5	6,837.2	
			6	3,217.5	
			7	3,290.6	
			8	7,175.2	
			9	7,064.3	
			10	7,019.9	
산업11	-	46,227.1	1	7,797.2	
			2	7,861.7	
			3	7,323.3	
			4	7,725.1	
			5	7,995.7	
			6	4,076.6	
			7	3,447.5	
산업12	-	20,292.3	1	4,086.6	
			2	4,078.9	
			3	4,034.3	
			4	4,051.1	
			5	4,041.4	
산업13	-	33,767.8	1	11,354.1	
			2	11,830.1	
			3	10,583.6	
산업14	-	48,332.2	1	4,478.1	
			2	9,891.0	
			3	8,962.0	
			4	7,785.1	
			5	5,218.6	
			6	4,337.0	
			7	3,913.0	
			8	3,747.4	
산업15	-	17,079.9	1	8,345.7	
			2	8,734.2	
산업16	-	42,798.4	1	14,225.8	
			2	14,241.6	
			3	14,331.0	

3)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지원1	-	5,142.9	1	603.0	• 분할 불가 • 합병 가능
			2	624.1	
			3	624.4	
			4	740.7	
			5	696.9	
			6	623.7	
			7	624.4	
			8	605.7	
지원2	-	3,816.4	1	532.7	
			2	534.8	
			3	1,646.4	
			4	574.3	
			5	528.2	
지원3	-	13,566.0	1	1,470.1	
			2	1,479.7	
			3	1,875.2	
			4	1,874.9	
			5	1,862.6	
			6	1,873.5	
			7	1,866.8	
			8	1,263.2	
지원4	-	11,919.0	1	1,452.6	• 분할 불가
			2	1,824.0	• 분할 가능 (단 2필지) • 합병 가능
			3	8,642.4	
지원5	-	9,907.5	1	723.9	• 분할 불가 • 합병 가능
			2	723.1	
			3	720.5	
			4	719.4	
			5	719.1	
			6	498.6	
			7	498.6	
			8	661.4	
			9	662.3	
			10	661.5	
			11	663.8	
			12	661.4	
			13	667.3	
			14	663.3	
			15	663.3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지원6	-	3,385.2	1	1,053.9	• 분할 불가 • 합병 가능
			2	1,027.7	
			3	801.1	
			4	502.5	
지원7	-	4,561.4	1	1,175.0	
			2	1,181.7	
			3	1,180.3	
			4	1,024.4	
지원8	-	4,821.5	1	231.7	
			2	231.9	
			3	232.1	
			4	231.8	
			5	231.5	
			6	232.6	
			7	234.0	
			8	234.0	
			9	233.6	
			10	233.9	
			11	233.5	
			12	232.2	
			13	338.7	
			14	331.9	
			15	333.2	
			16	333.5	
			17	229.7	
			18	231.2	
			19	230.5	
지원9	-	8,524.7	1	1,086.9	
			2	1,552.9	
			3	1,503.7	
			4	1,505.3	
			5	1,491.8	
			6	1,384.1	
지원10	-	17,101.9	1	1,918.2	• 분할 가능
			2	1,898.5	
			3	1,873.2	
			4	6,516.1	
			5	4,895.9	
지원11	-	9,456.0	1	1,190.5	• 분할 가능
			2	1,185.1	
			3	1,185.1	
			4	1,178.9	
			5	1,167.3	
			6	1,185.1	
			7	1,185.1	
			8	1,178.9	

○ 변경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m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²)	
지원1	-	5,142.9	1	603.0	• 분할 불가 • 합병 가능
			2	624.1	
			3	624.4	
			4	740.7	
			5	696.9	
			6	623.7	
			7	624.4	
			8	605.7	
지원2	-	3,816.4	1	532.7	
			2	534.8	
			3	1,646.4	
			4	574.3	
			5	528.2	
지원3	-	13,566.0	1	1,470.1	
			2	1,479.7	
			3	1,875.2	
			4	1,874.9	
			5	1,862.6	
			6	1,873.5	
			7	1,866.8	
			8	1,263.2	
지원4	-	11,919.0	1	1,452.6	• 분할 불가
			2	1,824.0	• 분할 가능 (단 2필지) • 합병 가능
			3	8,642.4	
지원5	-	9,907.5	1	723.9	• 분할 불가 • 합병 가능
			2	723.1	
			3	720.5	
			4	719.4	
			5	719.1	
			6	498.6	
			7	498.6	
			8	661.4	
			9	662.3	
			10	661.5	
			11	663.8	
			12	661.4	
			13	667.3	
			14	663.3	
			15	663.3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지원6	-	3,385.2	1	1,053.9	• 분할 불가 • 합병 가능
			2	1,027.7	
			3	801.1	
			4	502.5	
지원7	-	4,561.4	1	1,175.0	
			2	1,181.7	
			3	1,180.3	
			4	1,024.4	
지원8	-	4,821.5	1	231.7	
			2	231.9	
			3	232.1	
			4	231.8	
			5	231.5	
			6	232.6	
			7	234.0	
			8	234.0	
			9	233.6	
			10	233.9	
			11	233.5	
			12	232.2	
			13	338.7	
			14	331.9	
			15	333.2	
			16	333.5	
			17	229.7	
			18	231.2	
			19	230.5	
지원9	-	8,524.7	1	1,086.9	
			2	1,552.9	
			3	1,503.7	
			4	1,505.3	
			5	1,491.8	
			6	1,384.1	
지원10	-	17,092.3	1	1,911.6	• 분할 가능
			2	1,900.0	
			3	1,874.5	
			4	6,510.7	
			5	4,895.5	
지원11	-	9,449.9	1	1,180.1	• 분할 가능
			2	1,186.3	
			3	1,186.0	
			4	1,184.5	
			5	1,178.6	
			6	1,186.0	
			7	1,186.0	
			8	1,162.4	

4) 주차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계		9,277.0	—	9,277.0	
주80	—	2,934.3	—	2,934.3	
주81	—	651.7	—	651.7	
주102	—	3,969.6	—	3,969.6	
주103	—	555.6	—	555.6	
주104	—	1,165.8	—	1,165.8	

5)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오수12	—	500	—	500	

6)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계		91,476.9	—	91,476.9	
자동차정류장6	—	28,511.0	—	28,511.0	
자동차정류장7	—	62,965.9	—	62,965.9	

7)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계		21,873.8	—	21,873.8	
청사33	—	4,000.0	1	4,000.0	
청사33-1	—	5,864.1	1	5,864.1	• 합병 가능
청사33-2	—	6,858.2	1	6,858.2	
청사33-3	—	5,151.5	1	5,151.5	

8) 해수유입시설(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계		187.4	—	187.4	
해수1	—	100.0	—	100.0	
해수2	—	87.4	—	87.4	

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조서 (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_(변경)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3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 C31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넷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5B 3/2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4	용도	허용용도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기정>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변경> • 4-3, 4, 5, 6 필지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4-1, 2, 7 필지 • C10 : 식료품 제조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정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table><tr><td></td><td>N9</td><td>5G 9/1</td><td>5G 8/1</td><td>5G 8/2</td></tr></table>		N9	5G 9/1	5G 8/1	5G 8/2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table><tr><td></td><td>5G 8/6</td><td>5G 7/6</td><td>5GY 7/6</td><td>5GY 5/6</td></tr></table>		5G 8/6	5G 7/6	5GY 7/6	5GY 5/6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table><tr><td></td><td>5G 3/4</td><td></td><td>5GY 3/4</td><td></td></tr></table>		5G 3/4		5GY 3/4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6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9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 C28 : 전기장비제조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정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table><tr><td></td><td></td><td></td><td></td></tr><tr><td>N9</td><td>5G 9/1</td><td>5G 8/1</td><td>5G 8/2</td></tr></table>					N9	5G 9/1	5G 8/1	5G 8/2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table><tr><td></td><td>5G 8/6</td><td>5G 7/6</td><td>5GY 7/6</td><td>5GY 5/6</td></tr></table>				5G 8/6	5G 7/6	5GY 7/6	5GY 5/6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table><tr><td></td><td>5G 3/4</td><td></td><td>5GY 3/4</td><td></td></tr></table>		5G 3/4		5GY 3/4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5, 7, 8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부합하는 공장으로서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심사를 득한 업종으로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업종 - 제한업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3(C233,C239)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 C28 : 전기장비제조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9, 10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유치 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 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 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 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 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 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 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 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 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정처리하여 이용 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 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1, 12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3, 14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5, 16	용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강조색	5G 3/4					5GY 3/4			

2) 지원시설용지_(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지원1~7, 9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제6호 종교 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 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 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형태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 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 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설치를 권장한다. •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건축물 의 보안상 필요할 경우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벽의 재료, 형태> •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안상 투시형 벽면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 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 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 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5YR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지원8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단독주택의 경우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호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단독주택의 경우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단독주택의 경우 200% 이하)																		
		높이/세대수		• 최고층수 : 5층 이하(단독주택의 경우 4층 이하,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6세대 이하)																		
		배치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형태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1층 높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시설설치를 권장한다. -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건축물의 보안상 필요할 경우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벽의 재료, 형태> -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도록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안상 투시형 벽면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table><tr><td>주조색</td><td>N9</td><td>N8</td><td>5B 9/2</td><td>5G 8/2</td></tr><tr><td>보조색</td><td>5Y 8/6</td><td>5Y 6/4</td><td>5YR 6/4</td><td>5YR 5/4</td></tr><tr><td>강조색</td><td colspan="2">5Y 3/4</td><td colspan="2">5YR 3/4</td></tr></table>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5YR 3/4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5YR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지원10, 1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형태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1층 높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시설설치를 권장한다. -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건축물의 보안상 필요할 경우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벽의 재료, 형태> -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안상 투시형 벽면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table><tr><td>주조색</td><td>5BG 8/1</td><td>5BG 8/2</td><td>10B 8/1</td><td>10B 8/2</td></tr><tr><td>보조색</td><td>5BG 6/2</td><td>8.75B 6/4</td><td>3.75B 7/2</td><td>3.75B 6/4</td></tr><tr><td>강조색</td><td colspan="2">10BG 4/4</td><td colspan="2">5B 3/2</td></tr></table>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5B 3/2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5B 3/2																				

4) 주차장_(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주80~81, 102~104	용도	허용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에 한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table><tr><td rowspan="2">주조색</td><td></td><td></td><td></td><td></td></tr><tr><td>N9</td><td>N8</td><td>5B 9/2</td><td>5G 8/2</td></tr><tr><td rowspan="2">보조색</td><td></td><td></td><td></td><td></td></tr><tr><td>5Y 8/6</td><td>5Y 6/4</td><td>5YR 6/4</td><td>5YR 5/4</td></tr><tr><td rowspan="2">강조색</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5Y 3/4</td><td colspan="2">5YR 3/4</td></tr></table>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5YR 3/4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5YR 3/4																												

5) 오수중계펌프장_(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오수 중계 펌프장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오수12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5B 3/2					

6) 자동차 정류장_(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자동차 정류장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자동차정류장 6~7	용도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치		-				
		형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7) 공공청사_(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공 청사 (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구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공공청사33, 33-1, 33-2, 33-3	용도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공청사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형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5B 3/2

8) 해수유입시설_(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해수 유입 시설 (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구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해수1, 2	용도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취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5B 3/2

바.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_(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_(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산업1~16	획지 분할 및 합병	- 산업시설의 종류 및 업종에 적합한 규모의 필지가 되도록 한다. - 대지 분할시 최소면적은 1,650㎡이상 되도록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정 세장비(가능하면 1:1~1:2 범위내)를 고려하여 분할 또는 합병하도록 한다.	
		옥외 광고물	기본 원칙	- 건축물의 재료, 형태, 규모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산업시설의 간판은 벽면 부착형 입체문자 간판을 원칙으로 함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블록 각각 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형광색 등 자극적인 색채는 지양하며 사용가능한 색의 수를 4색 이내로 제한
			가로형 간판	- 산업시설의 간판은 벽면 부착형 입체문자 간판을 기본형으로 함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며 주요 도로에 접한 입면의 상단부의 적정 위치에 설치 - 간판 조명은 채널방식으로 LED를 사용하여 단색으로 설치 - 조명은 백색 광원을 기준으로 하며 점멸 등 효과 금지
			지주 이용 간판	-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2) 지원시설용지_(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변경 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지원1~11	획지 분할 및 합병	- 지원시설용지의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건축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 지원10BL 및 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제외) - 획지의 합병은 인접대지에 대하여 합병할 수 있다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지정된 대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면적의 30%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 획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할가능(단 2필지) - 도면표시 : 대지분할가능선				
		옥외 광고물	<table><tr><td>가로형 간판</td><td>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각각 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폭의 80퍼센트 이내, 최대 크기는 10미터 이내, 세로 크기는 1.2미터 이내로 설치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td></tr><tr><td>돌출형</td><td>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5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와 연립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4미터(상업지역은 2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td></tr></table>	가로형 간판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각각 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폭의 80퍼센트 이내, 최대 크기는 10미터 이내, 세로 크기는 1.2미터 이내로 설치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돌출형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5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와 연립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4미터(상업지역은 2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가로형 간판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각각 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폭의 80퍼센트 이내, 최대 크기는 10미터 이내, 세로 크기는 1.2미터 이내로 설치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돌출형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5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와 연립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4미터(상업지역은 2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대지안의 조경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연면적이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건축연면적이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건축연면적이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목포시 건축조례 기준에 의한다.						

아.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도 : 게재생략

7.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가. 지형도면 승인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참조

나.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해당없음) : 사업준공 완료(2017년 4월 27일)로 해당사항 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목포시청(기업유치실 061-270-8970) 및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사업개발본부 061-277-9667, 9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목포시 공고 제2019-451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충원 계획’에 따라 정부정책 및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총수(안 제2조) : 1,203명 → 1,258명(⊕55명)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인력 : 44명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업무 추진 인력 : 1명
- 지방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업무 추진 인력 : 1명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인력 : 5명
- 도로명주소 고도화 업무 추진 인력 : 4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안 제4조, 별표 3)

(단위 : 명)

구 분	현 행						조 정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203					1,203	1,258 (⊕55)					1,258 (⊕55)
정무직	1	1					1	1				

구 분		현 행						조 정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소계	1,182	1,182						1,237 (⊕55)	1,237 (⊕55)			
	3급	1	1					1	1				
	4급	9	4	1	1	3		9	4	1	1	3	
	5급	68	24	3	3	15	23	68	24	3	3	15	23
	6급이하	1,104	1,104						1,159 (⊕55)	1,159 (⊕55)			
연구직	연구사	17	17						17	17			
지도직	지도사	3	3						3	3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조표 : 별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6.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없음

7. 예산사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계	55	55		2,208,306,400	
8급	20	20	42,882,890	857,657,800	3호봉
9급	35	35	38,589,960	1,350,648,600	1호봉

8. 입법예고 기간 : 2019. 4. 8. ~ 4. 29.(21일간)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행안부 지방분권과-165(2017.8.10.)호, 도 자치행정과-8004(2017.06.12.)호 :
향후 5년간 공무원 증원 분야별 지역현안 수요

○ 행안부 자치분권과-501(2017.09.11.)호, 도 자치행정과-10978(2017.08.11.)호 :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 이행계획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203명” 을 “1,258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82명” 을 “1,237명” 으로 하고 제2호 중 “22명” 을 “23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258	1,258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1,237	1,237				
3급	1	1				
4급	9	4	1	1	3	
5급	68	24	3	3	15	23
6급이하	1,159	1,159				
연구직계	17	17				
연구관						
연구사	17	17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총수는 <u>1,203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공무원의 총수) ----- ----- <u>1,258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181명</u>		1. ----- <u>1,235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2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3명</u>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table><tr><th> 기관별 직급별 </th><th>총 계</th><th>본 청</th><th>의회</th><th>직속 기관</th><th>사업소</th><th>동</th></tr><tr><td>총 계</td><td><u>1,203</u></td><td colspan="5"><u>1,203</u></td></tr><tr><td>정무직 계</td><td><u>1</u></td><td></td><td></td><td></td><td></td><td></td></tr><tr><td>시 장</td><td><u>1</u></td><td><u>1</u></td><td></td><td></td><td></td><td></td></tr><tr><td>일반직 계</td><td><u>1,182</u></td><td colspan="5"><u>1,182</u></td></tr><tr><td>3급</td><td><u>1</u></td><td><u>1</u></td><td></td><td></td><td></td><td></td></tr><tr><td>4급</td><td><u>9</u></td><td><u>4</u></td><td><u>1</u></td><td><u>1</u></td><td><u>3</u></td><td></td></tr><tr><td>5급</td><td><u>68</u></td><td><u>24</u></td><td><u>3</u></td><td><u>3</u></td><td><u>15</u></td><td><u>23</u></td></tr><tr><td>6급 이하</td><td><u>1,104</u></td><td colspan="5"><u>1,104</u></td></tr><tr><td>연구직 계</td><td><u>17</u></td><td colspan="5"><u>17</u></td></tr><tr><td>연구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연구사</td><td><u>17</u></td><td colspan="5"><u>17</u></td></tr><tr><td>지도직 계</td><td><u>3</u></td><td colspan="5"><u>3</u></td></tr><tr><td>지도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지도사</td><td><u>3</u></td><td colspan="5"><u>3</u></td></tr></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u>1,203</u>	<u>1,203</u>					정무직 계	<u>1</u>						시 장	<u>1</u>	<u>1</u>					일반직 계	<u>1,182</u>	<u>1,182</u>					3급	<u>1</u>	<u>1</u>					4급	<u>9</u>	<u>4</u>	<u>1</u>	<u>1</u>	<u>3</u>		5급	<u>68</u>	<u>24</u>	<u>3</u>	<u>3</u>	<u>15</u>	<u>23</u>	6급 이하	<u>1,104</u>	<u>1,104</u>					연구직 계	<u>17</u>	<u>17</u>					연구관							연구사	<u>17</u>	<u>17</u>					지도직 계	<u>3</u>	<u>3</u>					지도관							지도사	<u>3</u>	<u>3</u>					<table><tr><th> 기관별 직급별 </th><th>총 계</th><th>본 청</th><th>의회</th><th>직속 기관</th><th>사업소</th><th>동</th></tr><tr><td>총 계</td><td><u>1,258</u></td><td colspan="5"><u>1,258</u></td></tr><tr><td>정무직 계</td><td><u>1</u></td><td></td><td></td><td></td><td></td><td></td></tr><tr><td>시 장</td><td><u>1</u></td><td><u>1</u></td><td></td><td></td><td></td><td></td></tr><tr><td>일반직 계</td><td><u>1,237</u></td><td colspan="5"><u>1,237</u></td></tr><tr><td>3급</td><td><u>1</u></td><td><u>1</u></td><td></td><td></td><td></td><td></td></tr><tr><td>4급</td><td><u>9</u></td><td><u>4</u></td><td><u>1</u></td><td><u>1</u></td><td><u>3</u></td><td></td></tr><tr><td>5급</td><td><u>68</u></td><td><u>24</u></td><td><u>3</u></td><td><u>3</u></td><td><u>15</u></td><td><u>23</u></td></tr><tr><td>6급 이하</td><td><u>1,159</u></td><td colspan="5"><u>1,159</u></td></tr><tr><td>연구직 계</td><td><u>17</u></td><td colspan="5"><u>17</u></td></tr><tr><td>연구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연구사</td><td><u>17</u></td><td colspan="5"><u>17</u></td></tr><tr><td>지도직 계</td><td><u>3</u></td><td colspan="5"><u>3</u></td></tr><tr><td>지도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지도사</td><td><u>3</u></td><td colspan="5"><u>3</u></td></tr></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u>1,258</u>	<u>1,258</u>					정무직 계	<u>1</u>						시 장	<u>1</u>	<u>1</u>					일반직 계	<u>1,237</u>	<u>1,237</u>					3급	<u>1</u>	<u>1</u>					4급	<u>9</u>	<u>4</u>	<u>1</u>	<u>1</u>	<u>3</u>		5급	<u>68</u>	<u>24</u>	<u>3</u>	<u>3</u>	<u>15</u>	<u>23</u>	6급 이하	<u>1,159</u>	<u>1,159</u>					연구직 계	<u>17</u>	<u>17</u>					연구관							연구사	<u>17</u>	<u>17</u>					지도직 계	<u>3</u>	<u>3</u>					지도관							지도사	<u>3</u>	<u>3</u>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u>1,203</u>	<u>1,203</u>																																																																																																																																																																																																																	
정무직 계	<u>1</u>																																																																																																																																																																																																																		
시 장	<u>1</u>	<u>1</u>																																																																																																																																																																																																																	
일반직 계	<u>1,182</u>	<u>1,182</u>																																																																																																																																																																																																																	
3급	<u>1</u>	<u>1</u>																																																																																																																																																																																																																	
4급	<u>9</u>	<u>4</u>	<u>1</u>	<u>1</u>	<u>3</u>																																																																																																																																																																																																														
5급	<u>68</u>	<u>24</u>	<u>3</u>	<u>3</u>	<u>15</u>	<u>23</u>																																																																																																																																																																																																													
6급 이하	<u>1,104</u>	<u>1,104</u>																																																																																																																																																																																																																	
연구직 계	<u>17</u>	<u>17</u>																																																																																																																																																																																																																	
연구관																																																																																																																																																																																																																			
연구사	<u>17</u>	<u>17</u>																																																																																																																																																																																																																	
지도직 계	<u>3</u>	<u>3</u>																																																																																																																																																																																																																	
지도관																																																																																																																																																																																																																			
지도사	<u>3</u>	<u>3</u>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u>1,258</u>	<u>1,258</u>																																																																																																																																																																																																																	
정무직 계	<u>1</u>																																																																																																																																																																																																																		
시 장	<u>1</u>	<u>1</u>																																																																																																																																																																																																																	
일반직 계	<u>1,237</u>	<u>1,237</u>																																																																																																																																																																																																																	
3급	<u>1</u>	<u>1</u>																																																																																																																																																																																																																	
4급	<u>9</u>	<u>4</u>	<u>1</u>	<u>1</u>	<u>3</u>																																																																																																																																																																																																														
5급	<u>68</u>	<u>24</u>	<u>3</u>	<u>3</u>	<u>15</u>	<u>23</u>																																																																																																																																																																																																													
6급 이하	<u>1,159</u>	<u>1,159</u>																																																																																																																																																																																																																	
연구직 계	<u>17</u>	<u>17</u>																																																																																																																																																																																																																	
연구관																																																																																																																																																																																																																			
연구사	<u>17</u>	<u>17</u>																																																																																																																																																																																																																	
지도직 계	<u>3</u>	<u>3</u>																																																																																																																																																																																																																	
지도관																																																																																																																																																																																																																			
지도사	<u>3</u>	<u>3</u>																																																																																																																																																																																																																	

비용소요 추계서 (1)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9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35	35	35	38,589,960	1,350,648,600	1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9급 1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38,589,960		
○ 인건비	27,586,090		
- 기본급	19,108,800	1,592,400원*12월	
- 수당	8,477,290		
•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 명절휴가비	1,910,880	1,592,400원*60%*2회	
• 연가보상비	912,976	1,592,400원*86%*1/30*20일	
• 시간외수당	4,093,440	8,528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740,000	145,000원*12월	
○ 이전경비	9,263,870		
- 성과상여금	2,376,440	2,160,4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5,825,33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8.375%	
- 국민건강보험금	989,11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12%	
- 장기요양보험금	72,990	(건강보험금*7.38%)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

비용소요 추계서 (2)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8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20	20	20	42,882,890	857,657,800	3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8급 3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42,882,890		
○ 인건비	30,694,380		
- 기본급	21,438,000	1,786,500원*12월	
- 수당	9,256,380		
•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 명절휴가비	2,143,800	1,786,500원*60%*2회	
• 연가보상비	1,024,260	1,786,500원*86%*1/30*20일	
• 시간외수당	4,528,320	9,434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740,000	145,000원*12월	
○ 이전경비	10,448,510		
- 성과상여금	2,794,880	2,540,8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6,473,37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8.375%	
- 국민건강보험금	1,099,15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12%	
- 장기요양보험금	81,110	(건강보험금*7.38%)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

비용소요 추계서 (2)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8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20	20	20	42,882,890	857,657,800	3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8급 3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42,882,890		
○ 인건비	30,694,380		
- 기본급	21,438,000	1,786,500원*12월	
- 수당	9,256,380		
•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 명절휴가비	2,143,800	1,786,500원*60%*2회	
• 연가보상비	1,024,260	1,786,500원*86%*1/30*20일	
• 시간외수당	4,528,320	9,434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740,000	145,000원*12월	
○ 이전경비	10,448,510		
- 성과상여금	2,794,880	2,540,8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6,473,37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8.375%	
- 국민건강보험금	1,099,15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12%	
- 장기요양보험금	81,110	(건강보험금*7.38%)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2,208,306	2,208,306	2,208,306	6,624,918
인 건 비		2,208,306	2,208,306	2,208,306	6,624,918
세 출		2,208,306	2,208,306	2,208,306	6,624,918
인 건 비		2,208,306	2,208,306	2,208,306	6,624,918
재원 조달		2,208,306	2,208,306	2,208,306	6,624,918
의존 재원	소 계	2,208,306	2,208,306	2,208,306	6,624,918
	보조금	-	-	-	-
	지방교부세	2,208,306	2,208,306	2,208,306	6,624,918
자체 수입	소 계	-	-	-	-
	지 방 세	-	-	-	-
	세외수입	-	-	-	-
지 방 채		-	-	-	-
기 금		-	-	-	-
특별회계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임대차계약신고대장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제5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신고대장을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목 포 시 장

1. 공고제목 : 2019.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공고
2. 공고기간 : 2019. 4. 8. ~ 2019. 4. 30.
3.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4. 대 상 : 225건(별도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건축행정과(☎061-270-3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	임대주택 도로명주소	주택유형	주택종류	대표자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8	20190328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	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이윤숙	20190327	20210326	140,000,000	0
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7	20190326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535번길6106동10 8호(상동,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준공공임대	양현미	20190308	20210307	140,000,000	
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7	20190326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535번길6103동15 01호(상동,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준공공임대	양현미	20190218	20210217	130,000,000	
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7	20190326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535번길6103동15 08호(상동,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준공공임대	양현미	20190218	20210217	130,000,000	
5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6	20190318	전라남도목포시부흥로30(상동,하당초원 타운아파트)101동동	아파트	준공공임대	김정수	20190305	20210304	10,000,000	500,000
6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5	20190313	전라남도목포시삼향천로131(옥암동,우 미아파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학남	20190304	20210303	5,000,000	400,000
7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4	20190313	전라남도목포시상동886외1필지우성아 파트102동1101호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김학남	20190225	20210224	5,000,000	530,000
8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3	20190313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37번길23(상 동,비파2차아파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이든누림 주식회사	20190307	20210306	5,000,000	400,000
9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2	20190311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에드가안채동	아파트	준공공임대	박민규	20190101	20191231	3,000,000	370,000
10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2	20190311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에드가안채동	아파트	준공공임대	박민규	20181224	20191223	3,000,000	380,000
1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1	20190308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6비파아파트303동 1108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220	20210219	5,000,000	450,000
1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1	20190308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5-1비파아파트202 동704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416	20210415	70,000,000	
1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1	20190308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5비파아파트102동 1505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225	20210224	5,000,000	400,000
1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1	20190308	전라남도목포시상동766상동2단지아파트 202동602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304	20210303	3,000,000	280,000
15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1	20190308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5-1비파아파트203 동1401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228	20210227	70,000,000	
16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1	20190308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5비파아파트103동 802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403	20210402	38,000,000	
17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1	20190308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5비파아파트103동 407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201	20200131	40,000,000	
18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1	20190308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5비파아파트101동 303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306	20210305	61,000,000	70,000

19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1	20190308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5-1비파아파트201동 509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205	20210224	63,000,000	70,000
20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0	20190307	전라남도목포시상동979-4 1동 5층 502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정미진	20190210	20200209	25,000,000	300,000
2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0	20190307	전라남도목포시상동979-4 1동 4층 403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정미진	20190120	20200119	10,000,000	400,000
2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0	20190307	전라남도목포시상동979-4 1동 3층 302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정미진	20190131	20201201	5,000,000	450,000
2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0	20190307	전라남도목포시상동979-4 1동 5층 501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정미진	20190209	20200208	15,000,000	350,000
2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70	20190307	전라남도목포시상동979-41동4층401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정미진	20190228	20200227	5,000,000	500,000
25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9	20190306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535번길610동60 2호(상동,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준공공임대	양현미	20190225	20210224	150,000,000	
26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9	20190306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535번길610동40 5호(상동,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준공공임대	양현미	20190105	20210106	123,000,000	
27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8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304	20200303	2,000,000	330,000
28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8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225	20200224	2,000,000	350,000
29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8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301	20200228	2,000,000	230,000
30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8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228	20200227	2,000,000	330,000
3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8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225	20200224	3,000,000	350,000
3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8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219	20200218	2,000,000	250,000
3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8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224	20200223	2,000,000	230,000
3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8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305	20200304	2,000,000	230,000
35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8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122	20200121	40,000,000	0
36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8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226	20200225	2,000,000	240,000

37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8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216	20200215	2,000,000	230,000
38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8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305	20200304	2,000,000	230,000
39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7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23번길17-4(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미숙	20190213	20200212	2,000,000	250,000
40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7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23번길17-4(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미숙	20190225	20200224	5,000,000	350,000
4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7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23번길17-4(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미숙	20190208	20200207	2,000,000	250,000
4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7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23번길17-4(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미숙	20190221	20200220	2,000,000	250,000
4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7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23번길17-4(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미숙	20190305	20200304	2,000,000	250,000
4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7	20190305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23번길17-4(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미숙	20190222	20200221	2,000,000	240,000
45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6	20190225	전라남도목포시남약1로52번나길12-7(옥암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오미숙	20190211	20200210	2,000,000	350,000
46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6	20190225	전라남도목포시남약1로52번나길12-7(옥암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오미숙	20190228	20200227	2,000,000	320,000
47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5	20190225	전라남도목포시상동766상동2단지아파 트201동1508호	아파트	단기임대	박준숙	20190212	20210211	38,000,000	0
48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4	20190220	전라남도목포시연산동1962-72층(122.92 m ²),3층(122.92m ²)	단독주택	준공공임대	김선희	20190202	20210801	80,000,000	0
49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3	20190220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218	20200217	2,000,000	230,000
50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3	20190220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118	20200117	2,000,000	250,000
5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3	20190220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224	20200223	2,000,000	210,000
5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3	20190220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07번길34-5(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명선	20190208	20190807	1,000,000	250,000
5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2	20190220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23번길17-4(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미숙	20190105	20200104	2,000,000	240,000
5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2	20190220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23번길17-4(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미숙	20190228	20200227	2,000,000	250,000

55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2	20190220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23번길17-4(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미숙	20190301	20200228	2,000,000	250,000
56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2	20190220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23번길17-4(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미숙	20190205	20200204	3,000,000	350,000
57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2	20190220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23번길17-4(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미숙	20190119	20200118	2,000,000	280,000
58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2	20190220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23번길17-4(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미숙	20190215	20200214	2,000,000	250,000
59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2	20190220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23번길17-4(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미숙	20190303	20190902	1,000,000	250,000
60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2	20190220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23번길17-4(상동)	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미숙	20190107	20200106	2,000,000	380,000
6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1	20190219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5비파아파트101 동1105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125	20210124	60,000,000	70,000
6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1	20190219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5비파아파트101 동1103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220	20200219	10,000,000	400,000
6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1	20190219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259신안비치아 파트202동306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214	20210213	100,000,000	
6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1	20190219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259신안비치아 파트201동912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124	20201023	10,000,000	450,000
65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1	20190219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5-1비파아파트20 1동808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227	20210226	60,000,000	
66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1	20190219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5비파아파트103 동1106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212	20210211	40,000,000	
67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1	20190219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5비파아파트103 동109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228	20210227	38,000,000	
68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1	20190219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5비파아파트103 동1209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222	20210221	35,000,000	
69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0	20190219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535번길6105동12 02호(상동,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준공공임대	양현미	20181231	20201230	145,000,000	
70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60	20190219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535번길6104동15 04호(상동,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준공공임대	양현미	20190130	20210129	130,000,000	
7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59	20190208	전라남도목포시남약1로52번나길12-7(옥 암동)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오미숙	20190207	20191207	2,000,000	300,000
7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58	20190208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동	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박은주	20181114	20191113	5,000,000	550,000

7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57	20190131	전라남도목포시양로42103동705호(대 성동,대성NH천년나무아파트)	아파트	단기임대	정하윤	20181202	20201201	10,000,000	650,000
7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56	20190129	전라남도목포시복산길6번길28(옥암동, 거성센트럴뷰)	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김훈	20190128	20210127	20,000,000	700,000
75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55	20190128	전라남도목포시삼각로10건국상제리제 오피스텔101호	준주택(오 피스텔)	매입임대주택	김남진	20190115	20210114	15,000,000	0
76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54	20190128	전라남도목포시복산길6번길28(옥암동, 거성센트럴뷰)	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김훈	20190122	20210121	200,000,000	
77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53	20190125	전라남도목포시복산길6번길28(옥암동, 거성센트럴뷰)	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김홍성	20190124	20210123	200,000,000	
78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52	20190123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동	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황선미	20190101	20191231	3,000,000	380,000
79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51	20190123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	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김배건	20190114	20200113	10,000,000	630,000
80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50	20190123	전라남도목포시101동301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8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9	20190123	전라남도목포시원산중앙로87(연산동,연 산주공3단지4단지아파트)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김현아	20190130	20210129	5,000,000	450,000
8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8	20190121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에드가안채동	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황선애	20181206	20191205	3,000,000	380,000
8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7	20190121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에드가안채동	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황선애	20181230	20191229	3,000,000	380,000
8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6	20190121	전라남도목포시양로42107동1801호(대 성동,목포대성엘에이치천년나무아파트)	아파트	단기임대	윤란미	20181229	20201228	40,000,000	500,000
85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5	20190118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에드가안채동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조영란	20181221	20191220	3,000,000	360,000
86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5	20190118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에드가안채동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조영란	20181221	20191220	3,000,000	380,000
87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3	20190115	전라남도목포시산정로186번길2(용당동)	단독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임성만	20181227	20191226	0	200,000
88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2	20190115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973포미타운주공 1단지107동1301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81226	20201225	5,000,000	500,000
89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2	20190115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202신안비치아 파트101동610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105	20210105	70,000,000	
90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2	20190115	전라남도목포시용당동982-25용당아파 트10동401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116	20210115	18,000,000	

9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2	20190115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5비파아파트103 동913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125	20210124	40,000,000	
9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2	20190115	전라남도목포시상동845비파아파트102 동205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131	20200530	70,000,000	
9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2	20190115	전라남도목포시연산동1262연산주공2단 시아파트203동902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이완숙	20190109	20210108	5,000,000	500,000
9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1	20190115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에드가안채동	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문정선	20181130	20201129	140,000,000	0
95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0	20190110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에드가안채동	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임정숙	20181114	20191113	3,000,000	350,000
96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40	20190110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에드가안채동	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임정숙	20181229	20191228	10,000,000	630,000
97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9	20190110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에드가안채동	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서보연	20181226	20201225	70,000,000	0
98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9	20190110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에드가안채동	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서보연	20181119	20201118	70,000,000	0
99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8	20190108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510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100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8	20190108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204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19,000,000	0
10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8	20190108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201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10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8	20190108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410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10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202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10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110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105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201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106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202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107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203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108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205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illegible]

127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404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19,000,000	0
128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405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129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406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130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407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13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408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13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409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13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410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13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503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135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504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19,000,000	0
136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505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137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506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138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204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19,000,000	0
139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205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140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207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14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303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14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304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19,000,000	0
14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305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14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306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99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904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19,000,000	0
200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905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0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906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0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907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20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908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0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909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05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910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206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001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207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002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08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003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09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004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19,000,000	0
210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005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1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006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1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007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21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008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1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009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15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010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216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101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217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102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18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103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19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104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19,000,000	0
220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105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21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106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22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107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34,000,000	0
223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108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24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7	20190103	전라남도목포시상동783-3101동1109호	아파트	준공공임대	라운주택주식 회사	20200501	20220430	129,000,000	0
225	2019-목포시-임대차 계약-1336	20190102	전라남도목포시옥암로177-1(석현동,에 드가안채)에드가안채동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이선희	20181110	20191109	3,000,000	350,000